

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

제정	2005. 6. 30	조례 제 595호
개정	2005. 10. 5	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전부개정	2016. 12. 12	조례 제163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5. 14	조례 제1813호
일부개정	2018. 9. 28	조례 제186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5. 14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및 소관에 대한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<신설 2018. 5. 14, 개정 2018. 9. 28>

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,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,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(국)장·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5. 14>

1.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
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3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18. 5. 14>

제4조 [제6조의2로 이동 2018. 5. 14]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[중전 제4조에서 이동 2018. 5. 14]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의2(의견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,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8. 5. 14]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별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팀장,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팀장,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담당 팀장 또는 개발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각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 [제7조의2로 이동 2018. 5. 14]

제10조(회의록)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,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
3. 심의사항
4. 위원 발언 요지
5. 심의 결과
6. 그 밖의 중요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·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2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2016. 12. 12 조례 제1633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㉞ 까지 생략

㉟ 「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, 제2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(국)장”으로 한다.

④⑩ 부터 ④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1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9. 28 조례 제18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